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5, pp.1-38  
<https://doi.org/10.29212/mh.2025..13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고려 전기 주현군 지휘체계와 운영양태

홍민호 | 육군군사연구소

### 목 차 머리말

1. 고려 전기 주현군 지휘체계의 정비 기초
2. 주현군의 운영구조와 지휘관의 所要
3. 지휘체계 규모와 운영양태로 본 주현군의 성격  
맺음말

**초 록**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지방사회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를 가하고, 국가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조처들을 해나갔다. 그 결과 주현군도 장교직제를 중심으로 지휘권이 한정·전속되었다. 정비 기초는 특정 계층에게 병권을 담보해주거나 전유하게 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직함이 주현군 지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도 시행되었다.

주현군은 군액 수 모두가 지역 내에 동원되어 있을 수는 없었다. 주현군은 번차를 나누어 운영되었고, 번상시위제와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던 군 규모는 적힌 그대로가 아니었다. 번상한 번차와 휴번인 번차들을 고려하면, 지역 내에서 입번한 이들의 규모는 줄어들는다.

때문에 이를 담당할 지휘관의 소요도 크지 않았다. 그래서 주현군의 지휘체계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한편, 주현군의 여러 역할들을 고려하면 평시에도 군역의 이동을 인도할 이들이 필요했다. 소략한 주현군의 장교군은 각 지역에 긴박되어야 했으므로, 장교군 하부의 기두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현군 운영상의 한 단면이다.

『高麗史』州縣軍條의 기재 방식은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5道 주현군은 번상에 중점을 두었기에 세세한 군현별 배속보다는 가용 가능 수를 일정 단위로 묶어 기록했다. 주현군은 이른바 보충대 역할에 특화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주제어(Keywords) : 주현군, 지휘체계, 번상시위, 군령, 지휘관

## 머리말

고려시대 중앙에는 2군 6위를 골격으로 하는 京軍이 있었고, 지방에는 州縣軍이라 불렸던 군이 있었다. 그 병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軍班氏族制<sup>1)</sup>·府兵制<sup>2)</sup>를 주장한 연구자들의 많은 논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양자가 혼합되었다는 견해가 도출되었다.<sup>3)</sup>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지 않지만, 고려 병제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해석 자체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 하에서 개경이 아닌 곳에 위치했던 주현군은 번상하여 경군을 이루기도, 또 邊戍에 동원되기도 했다. 『高麗史』 州縣軍條는 이들의 기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양계 지역에 배속된 주현군은 그들을 지휘하는 최상위직부터 일반 군의 수까지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다. 한편, 5도 지역의 경우는 병종만 구분되어 軍事道 단위로 폭넓게 수만 기록되었다. 고려 지방군의 특성에 다른 것이기에, 양계의 주현군을 ‘州鎮軍’으로 따로 구분해서 부르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4)</sup> 이는 널리 통용되었고, 이제 연구사

1) 千寬宇, 1958, 「閑人考」, 『社會科學』 2 ; 李基白, 1968,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 洪承基, 1983, 「高麗 初期 中央軍의 組織과 役割」,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 閔賢九, 1983, 「高麗後期の 軍制」,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2) 內藤雋輔, 1934, 「高麗兵制管見」, 『靑丘學叢』 15·16合 ; 未松保和, 1959, 「高麗四十二都府考略」, 『朝鮮學報』 14 ; 李佑成, 1965, 「高麗의 永業田」, 『歷史學報』 28 ; 姜晉哲, 1980,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學校出版部.

3) 金塘澤, 1983, 「高麗初期 地方軍의 形成과 性格」,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 張東翼, 1986, 「高麗前期의 選軍」,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 吳英善, 1992, 「고려 전기 군인층의 구성과 圍宿軍의 성격」, 『韓國史論』 28 ; 鄭景鉉, 1992,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仁哲, 1995, 「高麗前期 京軍의 構成과 軍人田의 支給對象」, 『정신문화연구』 18 ; 權寧國, 1999, 「고려 전기 군역제의 성격과 운영」, 『國史館論叢』 87 ; 洪元基, 2001, 『高麗前期軍制研究』, 혜안.

적으로 ‘주현군’은 5도의 것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실제 군의 움직임은 군령계통에 따른 지휘통솔에 의해 나타난다. 전술했듯, 주진군의 지휘체계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방수군의 별도 지휘계선도 확인되었다.<sup>5)</sup> 이에 더하여 양계의 수령들도 해당 지역 내의 군 지휘권을 지니고 있었다.<sup>6)</sup> 이렇게 주진군의 지휘체계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고 있는 반면, 주현군의 그것에 대해서는 州縣軍條의 기록 부재로 인해 견해가 나뉘었다.

먼저, 주현군은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여 있었고, 그 지휘는 단위 군현의 수령이 맡았으며, 일품군에만 장교층이 존재했다고 본 견해가 있다.<sup>7)</sup> 5도 지역은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지휘계선 마련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sup>8)</sup>

다음으로, 수령의 하부에서 향리들이 일품의 지휘를 전담하고 지휘체계를 전유했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sup>9)</sup> 이의 연속선상에서 정용·보승까지 향리들이 지휘했을 것으로 보거나,<sup>10)</sup> 주현군 지휘체계는 곧 고려의 지방 행정 체계와 그대로 조응하는 것이라 여기기도 했다.<sup>11)</sup>

분명 논의의 심화에 도움을 준 연구들이지만, 아직 난점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 곳곳에서 확인되는 지휘체계의 흔적을 어떻

4) 李基白, 1968, 위의 책.

5) 李基白, 1965, 「高麗 州縣軍考」, 『歷史學報』 29 ; 1968, 위의 책, 214~216쪽 ; 趙仁成, 1981, 「高麗 兩界 州鎮의 防戍軍과 州鎮軍」,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21~126쪽. 이후 재수록된 연구의 경우, 최초의 제외하고 최종본만 언급한다.

6) 李基白, 1968, 위의 책, 257쪽

7) 李基白, 1968, 위의 책 ; 鄭景鉉, 1992, 위의 글 ; 최중석, 2011, 「고려전기 보승·정용군의 성격과 지방군 구성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 58.

8) 최중석, 2011, 위의 글.

9) 박경자, 2001, 『고려시대 향리 연구』, 국학자료원, 185~193쪽 ; 강은경, 2002, 『高麗時代 戶長層 研究』, 혜안, 84~92쪽.

10) 권영국, 2001, 「고려전기 州縣軍의 동원과 지휘」, 『史學研究』 64 ; 2019,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11) 구산우, 2020,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남는다. 후자의 경우는 고려 지방·향촌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타난 것인데, 근거자료 및 그 해석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먼저, 고려는 유사시 군의 운용을 위해 별도의 관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쟁·전투 중에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위계’ 등에 의해 임시적으로 지휘권이 없는 다른 인물들이 지휘를 맡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전투 중 사료만을 토대로 常存했던 주현군의 평시 지휘체계와 구조를 복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분명 군적 관리 등 군정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군 지휘권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경군에는 長史·錄事가 있어 諸務를 담당했지만 이들을 경군의 지휘계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주현군에 있어서도 군정권자의 군령권 행사 가능 여부는 다시 살펴볼 지점이 있다.<sup>12)</sup>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며 본고에서 다루는 문제는 주현군의 편제와 관련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군령계통에 해당하는 지휘체계의 양태에 보다 초점을 둔다. 이는 실제 주현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주현군의 편제가 어떠한 기초 하에 정비되었는지 살펴본다. 또 주현군의 상시 운영구조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수의 지휘관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현군의 성격에 접근해본다. 그리하여 본고가 주현군 이해의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12) 물론 지금까지도 실제 운영상에서 군령-군정이 분별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는 구분이 더욱 뚜렷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애초의 의도 자체가 ‘군령-군정을 분별 없이 운영하려던 것’으로 바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그 의도에 유의하여 군령계통을 살피도록 한다.

## 1. 고려 전기 주현군 지휘체계의 정비 기초

주지하듯이, 신라 말 지방에는 시대적인 혼란을 틈타 반독립적인 존재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城主·將軍을 자칭하고, 중앙 조정과 독립된 관부를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행정권·군사권을 자체적으로 향유하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해나갔다. 연구사적으로 이들은 ‘豪族’으로 지칭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후삼국이 출현했고, 왕건은 공예의 정권을 차지하여 고려를 건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호족들과의 협력·견제 속에 통일을 이루었다. 이제 고려로서는 호족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여러 권한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兵權은 그 가운데에도 주요했다.

이후 정종대 光軍 30만을 선발하였다고 하고,<sup>14)</sup> 광종대 徇軍部の 개편 등을 통해 국왕과 관련한 군사력의 강화를 추구했다고 이해되고 있다.<sup>15)</sup> 그래도 여전히 지방에는 독자적인 직제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다.<sup>16)</sup> 하지만 성종대에 이르면 양상이 달라진다. 983년(성종 2)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sup>17)</sup>,

13) 이러한 이들을 ‘豪族’이라 범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다. 다만 본문에 서술한 특징들은 대체로 공유되고 있다. 자세한 연구서는 다음의 글 참조. 申虎澈, 2002,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개신, 13~64쪽.

14) 『高麗史節要』 권2, 定宗 2년.

15) 李基白, 1956, 「高麗 京軍考」,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68, 앞의 책, 61·62쪽; 鄭景鉉, 1987, 「高麗 太祖代의 徇軍部에 대하여」, 『韓國學報』 48, 68쪽; 鄭景鉉, 1992, 앞의 논문, 89·90쪽; 洪元基, 2001, 앞의 책, 50·51·116·117쪽; 전경숙, 2002, 「高麗初의 徇軍部」 『한국중세사연구』 12, 33~36쪽; 권영국, 2006, 「고려 초 徇軍部の 설치와 기능의 변화」, 『韓國史研究』 135; 2019, 앞의 책, 21~26쪽.

16) 예컨대, 962년(광종 13) 시점의 「龍頭寺址鐵幢竿」에는 堂大等 등의 자체 명칭이 확인되고 있다.

17)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2년 2월 戊子.

또 향리직제가 정비되었다.<sup>18)</sup> 그리고 일련의 조치들은 지방사회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를 가하고, 국가 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sup>19)</sup> 이렇게 지방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편이 가해진 이후 나타난 다음의 조치는 주목할만 하다.

A) 州郡의 병기를 회수하여 농기구를 주조하였다.<sup>20)</sup>

A는 987년의 사료로, 성종대 지방관 파견·향리직제 마련 등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 자료는 단순히 성종의 勸農策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호족의 후신으로서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세력들의 병권에 대해 가해진 직접적인 조치라 해석되고 있다.<sup>21)</sup> 그리고 병권을 회수한 결과 995년(성종 14) 무렵 6衛가 구성되면서 지방군과 경군간의 番上侍位制가 작동하게 되었다.<sup>22)</sup>

병권의 회수과정이 일단 마무리되면서, 이후 지방의 군제는 지방제도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정비된 것으로 여겨진다.<sup>23)</sup> 군역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존재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一品의 존재가 먼저 확인되지만, 군의 존재 목적을 고려할 때 전투를 담당한 精勇·保勝이 그보다 늦게 정비되었으리라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州縣軍條에 나타난 세 병종은 제도가 보조를 맞추어 정돈되었을 것이다.<sup>24)</sup> 고려의 지방제도는

18) 『高麗史』 권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成宗 2년.

19) 이는 군현제·향리제를 다룬 대체적인 연구들에서 인정되고 있다. 관련 연구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具山祐, 2003,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研究』, 혜안, 17~54쪽.

20)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農桑 成宗 6년 6월.

21) 李基白, 1956, 위의 책; 1968, 위의 책, 63쪽.

22) 鄭景鉉, 1992, 위의 논문; 洪元基, 2001, 위의 책, 92쪽.

23) 李基白, 1968, 위의 책.

24) 이기백은 1품군의 치우가 정용·보승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李基白, 1968, 위의 책, 225쪽). 이는 세 병종이 함께 국가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1018년(현종 9)에 일단 정비되었는데,<sup>25)</sup> 고려의 주현군 조직도 비슷한 시점에 일단 정돈을 마쳤을 것이다. 그간의 주현군 직제 정비 기초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료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B) 郡司의 戶長別將柳瓊·攝戶長 金甫·戶正 成允·副戶正 李希·書者 承福 등이 太平 10년 庚午年(1030) 12월 7일, 牒을 보내 寺代 안의 마땅한 곳을 좇아 (탑을) 세우는 것을 정했으니 같은 날에 三寶의 內庭 가운데로 정함.

12일, 正位□ 隊正嵩函·式莫이 一品軍 21명으로 五尺石을 掘取하여 세움.

.....

般若寺主光由·戶長柳瓊·散員積宜·請寺主人幸□等 各麻壹過.

副戶長肯禮·兵正佐宜·戶長柳瓊·神彥·妙興寺主覺由·金剛寺主·般若寺主·蓮長寺主·道俗寺主·禪院主人·天原寺主·碯川寺主眞宏·新房主賢宋·娑倦寺主神憶·副戶長承律·副正元白·智白·師行·順男等 各一度齋, 仙石寺主 二度齋, 隊正式莫 四度齋.<sup>26)</sup>

B는 淨兜寺 五層石塔의 건립과정을 담은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이하 형지기)의 일부이다. 시점은 太平 10년, 즉 1030년(현종 21)이며 당시에 활용되었던 여러 직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정용·보승·일품의 병종 구분이 해당 시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sup>27)</sup> 둘째, 別將, 散員, 隊正 등의 직함이 나

---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세 병종 외에 村留하는 이품·삼품의 존재도 확인된다(『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文宗 즉위). 하지만 더 이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 州縣軍條에 누락된 만큼 국가에서 그들을 파악·운영하는 방식이 정용·보승·일품과 달랐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품·삼품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5) 『高麗史節要』 권3, 顯宗 9년 2월.

26)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27) 이 때, 광군을 일품으로 연결한 견해가 있고(李基白, 1968, 위의 책), 광군이 정용·

타나고 있기에, 別將-散員-校尉-隊正 등으로 이어지는 주현군 장교직제가 이미 적용·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일정한 형식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戶長別將 柳瓊처럼 호장이 별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었고, 형지기는 役事의 경과를 기록하는 부분에서 그 직함을 모두 노출시켰다. 이는 해당 문서 내에서 두 개의 직을 겸임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다양한 향리들이 적혀 있음에도 추가적인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원이 주현군 장교 겸직 상태는 아님을 보여준다.<sup>28)</sup> 그런데 柳瓊의 직함은 이후 명단에서 戶長으로 정리되었다. 직함을 모두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생략할 때 장교직을 먼저 생략한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다른 인물들도 장교직·향리직 겸임 시 향리직이 우선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독 積宜·式莫·嵩函은 표기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산원·대정으로만 노출되고 있다. 이를 굳이 실제로는 향리직을 겸임하고 있음에도 생략된 것이라고 파악하기에는 기재 방식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

또 드러나는 시주자의 구성상으로도 주현군 장교직으로만 표기된 積宜·式莫를 향리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사찰의 역사이니 승려는 차치하더라도, 그 외에는 모두 향리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두 인물도 향리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시주자 명단에는 柒匠·鋤匠·繡帳·官吏·樂人 및 직함이 표기되지 않은 庶人들도 확인되고 있다. 굳이 향리가 아니더라도 積宜·式莫이 군인으로서 시주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3인은 ‘향리가 아닌 일품 장교’의 사례인 것이다.<sup>29)</sup>

보승·일품 등 모든 병종의 토대였다고 보는 이해가 있다(鄭景鉉, 1992, 위의 논문).

28) 경과를 다룬 부분의 경우, ‘戶長仁勇校尉 李元敏’의 사례처럼 무산계 겸대 시에도 이를 노출시켰다. 인물의 정보를 최대한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복된 직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타나는 인물 모두가 겸임상태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초기에만 한정된 사례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음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C) 閣門祗候 裴公淑, 郎將 劉永 등을 파견하여 (전주에) 가서 竹同 등이 반역한 이유를 조사하게 하였다. 배공숙 등이 성에 들어가 一品軍 隊正 【기록에 그 이름을 빠트렸다】 을 설득하여 적의 수괴를 제거하기를 모의했다. 계획이 거의 이루어질 무렵 (배공숙은) 참소를 받아 파면되고, 郎中 任龍臂와 郎將 金臣穎이 대신 부임하였다. 按察使가 보낸 관군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항복을 받지 못하고 40여 일이 지났는데, 일품군 대정이 승려들과 함께 죽동 등 10여 인을 죽여서 반란이 평정되었다.<sup>30)</sup>

C는 1182년(명종 12) 시점의 일로, 全州에서의 전선 건조 役事와 관련한 반란의 경과이다. 그 과정에서 이름 모를 일품군 대정이 나타난다. 全州司錄 陳大有 등의 횡포로 최초 반란이 시작된 시점은 3월이었다. 반란군에 의해 점거된 전주에서는 ‘州吏들은 모두 도망치고, 반란군이 判官 高孝升을 겁박해 주리를 바꾸도록 하였으며, 고효승이 그저 임명해줄 뿐인’<sup>31)</sup> 상황이 나타났다. 그리고 C는 4월 초 시점으로, 해당 시기는 반란의 수괴를 제거하기 위해 배공숙이 일품군 대정을 섭외하고부터 40여 일이 지났을 때이다.

29) 기존에는 積宜·式莫·嵩函을 자연히 향리일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권영국, 2019, 위의 책, 145쪽 ; 구산우, 2020, 위의 논문, 192·193쪽). 姓이 생략된 형태일 수 있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積宜·式莫·嵩函이라는 이름도 그들이 향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積·式·嵩은 분명 土姓이 아니었다. 현종대 시점에서 향리에게는 토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교층의 하부는 꼭 그렇지 않았다. 처음 인명이 나왔을 때 姓名이 모두 기재되고 있는 『高麗史』에서 簡弘·從甫 등 주진군 隊正을 역임한 인물 사례가 확인되지만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8년 6월 丙戌·권9, 世家9 文宗 33년 5월 戊辰), 簡·從은 『世宗實錄』 地理志 등에서 토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30)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2년 4월 戊申.

31)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2년 3월 庚寅.

C의 시기인 4월 초로부터 40일을 역산하면 일품군 대정은 3월 초순부터 이미 그 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3월 초 반란 발발 후 ①州吏들의 도망 ②州吏의 새로운 임면 ③일정 절차 진행 ④일품 장교직 제수의 단계를 모두 거친 것이 C의 일품 장교라고 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sup>32)</sup> 그렇다면 이 일품 대정은 해당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州吏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역시 향리가 아닌 일품군 장교 사례에 해당한다. 적어도 명종대까지는 비중의 문제를 차치하면, 출자가 특정 계층에 독점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정리해보자면 일품군 장교직자의 충원은 향리층에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출신의 인물들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국초부터 호족의 병권을 회수해가고자 했던 기조와도 부합하는 현상이다. 고려 정부가 권한 환수에 실패하였거나 소극적이었던다면, B, C와 같은 사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호족의 후신들만 병권을 전담하고 있어야 했다.

어떠한 권한은 해당 조직의 직함에만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타 타조직의 직함과 위세를 통해 군의 지휘 권한을 보유할 수 있었다면 군 운영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구성상으로도 지방 유력 세력들로만 그 권한자를 충당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호족이 난립한 후삼국을 겪은 고려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비록 일부일지라도 출신을 다양화하고, 기존의 직함과 상관없이 해당 집단을 위해 마련된 직제인 주현군 장교직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지휘권을 한정하고 전속시켜야 했다.

32) 설사 겁박으로 인해 정식 절차 없이 임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은 일품군 대정으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① 이 당시 임시적 임명 인물군에도 포함되지 않았거나 ② 이미 일품군 대정만을 가진 자에게 추가로 향리직을 제수하였고, 고려 정부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관찬 사서에는 장교직만 기록되었을 수 있다. 역시 어느 경우에도 향리가 일품군 대정을 겸임한 사례는 아니다.

그리하여 정용·보승·일품 각기 따로 직제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구성하였다. 일품의 경우 이미 따로 분리되어 있음을 B, C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京軍에서 병종에 따라 구분된 계선이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33)</sup> 주현군은 번상시위를 통해 경군이랑 연동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게다가 고려는 역시 정용·보승의 군액 수를 구별하여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주현군 역시 정용·보승 간 장교직 계선이 구분되었을 것이다.<sup>34)</sup>

이를 감안하여, 다음 자료와 관련한 견해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D1) 각 州의 一品軍 別將은 副戶長 이상에서, 校尉는 兵正·倉正·戶正·食祿正·公須正에서, 隊正은 副兵正·副倉正·副戶正·諸壇正으로서 弓料를 통해 선발해 가려서 충원한다.<sup>35)</sup>

D2) 別將은 副戶長 이상에서, 校尉는 兵正·倉正·戶正·食祿正에서, 隊正은 副兵正·副倉正·副戶正·諸壇正으로서 弓料를 통해 선발하여 겸임시킨다.<sup>36)</sup>

D1과 D2는 향리의 일품군 장교 겸임 규정으로 수록처는 다르지만 같은 1069년(문종 23)의 판문이다. 이에 대해 D2가 보다 신뢰성을 가진다고 본 견해부터 살피도록 한다. 향리가 정용·보승의 장교를 맡은 사례가 타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지침은 일품에 한정되지 않은 D2의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리들은 일품 뿐 아니라 정용·보승의 지휘까지 담당하였다고 보았다.<sup>37)</sup>

하지만 D2를 우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전거가 된 『安東權氏

33) 경군의 직함에도 興威衛保勝別將 金永暉(「金恂墓誌銘」)·保勝別將 朴允鏐(「閔漬墓誌銘」)·興威衛保勝別將 趙璉(「許珙墓誌銘」) 등 병종별로 구분된 사례가 확인된다.

34) 이는 뒤에서 살필 「宋子清墓誌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5) 『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文宗 23년 3월 判.

36) 『高麗史』 권75, 志29 選舉3 銓注 鄉職 文宗 23년 3월 判.

37) 권영국, 2019, 위의 책, 140~150쪽; 구산우, 2020, 위의 글, 190~196쪽.

成化譜』 내의 인물 사례들이 D2와 부합하지 않거나 표기상에서 문제가 보이거나와,<sup>38)</sup> 족보 편찬자들이 13세기 이전은 이미 기록이 소략하다고 한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sup>39)</sup> 또 전근대 사회에서는 선대에 대한 筆削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생각해야 한다.<sup>40)</sup> 또 이들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였을 가능성도 있다.<sup>41)</sup> 족보에 나타난 단순 직함으로 D2를 우선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D1은 D2에 비해 상세하다. 일품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나타나며, 교위에서 오를 수 있는 직에 公須正이 추가되어 있다. 당시 史草에는 없었는데 『高麗史』의 찬자가 이 내용을 굳이 삽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D1이 보다 당시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품에 한정된 조항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D1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지휘권이 장교직제를 중심으로 부여되도록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

38) 예시로 쓰인 인물은 대개 '保勝別將 副戶長 中允 權仲侍'와 '精勇別將 倉祿正 權次平'이다. 먼저 권차평은 창록정이면서 정용별장이었다. 성화보에 따르면 권차평은 權守平과 동렬이다. 그리고 권수평은 1250년(고종 37) 사망했다(『高麗史』 권 23, 世家23 高宗 37년 7월). 그렇다면 사료 D군의 장교 선발 원칙이 지켜지는 시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D2에 따르면 권차평은 창록정으로 보승별장이 될 수 없었다. 별장은 부호장 이상의 직위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39) 『安東權氏成化譜』 序.

40) 李樹建, 1998, 「조선시대 신분사 관련 자료의 비판—姓貫, 家系, 人物관련 僞造資料와 僞書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14, 1~14쪽. 실제 성화보와 직접 관련된 사례도 확인된다. 조선 세종대의 權隄는 조상 權守平을 三韓功臣 權奎의 후손으로 거짓 기록하다가 문제가 되었다(『世宗實錄』 권123, 世宗 31년 2월 癸酉).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성종대 간행된 성화보에는 여전히 권수평의 선대를 권행과 연결했다. 또 성화보 찬자가 객관성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더라도, 이미 그들이 활용한 기초자료에서부터 수정이 가해진 상태였을 수도 있다.

41) 성화보 내 주현군 장교직과 향리직을 보유한 인물에 한정해볼 때, 주 38)의 사례가 일반적이었다면 다른 이들도 모두 장교직+향리직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기재된 사례가 다수임을 볼 때, 권중시나 권차평이 이례적이다. 또 장교직만 적힌 이들이 향리직 겸임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다. 군이 이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향리직제로는 주현군과 체계상 직접 연관이 없고, 주현군 장교직 수여를 통해서 지휘권이 부여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자연스레 기존 직임을 바탕으로 일품을 지휘했다면 D군이 나타나야 할 당위 자체가 없다. 일품의 지휘는 어디까지나 일품 장교직의 직분인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 유력자로서 향리라는 신분계층을 바탕으로 일품직이 자동 담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향리들의 직임에 일품 지휘가 포함되고 일품 장교는 향리의 서열에 따라서만 임명된 듯 여기기도 하였다.<sup>42)</sup> 모든 향리들이 담보된 일품 장교를 겸임하고, 그들로만 일품 장교가 구성되는 체제였다면 향리가 향리로서 일품을 지휘했다는 말이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D군에는 弓科를 거쳐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일품직 겸대자들이 일정한 제한을 넘어선 이 들임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차치하고 앞서 언급한 성화보를 보더라도 모든 戶長이 別將을 지니고 있지 않다. 시기적으로 이후이기는 하지만 1312년(충선왕 4)에는 향리의 아들에게 伍尉를 冒受하는 것을 금기시키는 조치가 확인되기도 한다.<sup>43)</sup> 본래 향리층에의 장교직 제수는 자동 담보되어 사사roi 혹은 자유roi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D군의 존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운영의 필요에 따라 일품 병종에 한하여 향리에게 겸직을 일부 허용하되, D군의 규정에 따라서만 임명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규정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비향리층에 비해 향리층은 많은 수가 일품 장교를 차지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비향리층 장교의 존재를 고려하면, 이는 그들이 체계를 전유하도록 만들어진 규정은 아니었다. 성종대 이래 군현제 정비가 어떠

42) 박경자, 2001, 위의 책, 185~193쪽; 강은경, 2002, 위의 책, 84~92쪽.

43) 『高麗史』 권75, 志29 選舉3 鄉職 忠宣王 4년.

한 의도였는지, 호족이 어떻게 향리로 변모했는지를 감안하면 더욱 D군은 특혜 조항이 아니라 한계를 정해놓은 통제 규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한 가지 견해를 더 검토하도록 한다. 나말려초 호족의 지휘 아래 묶였던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장교직 체계와 구분되는 지역 자위체를 전제하면서 그 내부에 대감·제감이라는 지휘계선을 상정한 이해이다.<sup>44)</sup> 주장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宋子清墓誌銘」이었다. 묘지명의 주인공인 송자청은 寧州 출신으로, 조부·부는 호장 출신이다. 그는 향읍의 문서를 관장하는 업무를 돕다가 병마사에게 발탁되었다. 이는 양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5도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표 1>은 「송자청묘지명」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宋子清墓誌銘」의 해석에 대한 견해

구분	표점문	번역문
(가)45	兵馬使入本州次, ①弟監選, 至於公以才 ■拔萃, ②改差爲精勇弟(監)(隊)正, 旋爲 郎將.	병마사가 그 주에 들어와 弟監을 선발 하니, 공의 재능이 ■ 뛰어나므로 고쳐 서 정용제감대정으로 삼았다가 곧 낭장 이 되었다.
(나)46	兵馬使入本州, ①次弟監選, 至於公, 以 才■拔萃, ②改差爲精勇, 弟(爲)(隊)正, 旋爲郎將.	병마사가 그 주에 들어와서 차례로 보 고 선발하는데, 공에 이르니 재주로서 선발하였다 고쳐서 정용이 되고, 차례 로 대정이 되었으며, 곧 낭장이 되었다.

(가)는 보다 최근에 나온 것으로, 향촌사회에 弟監이 잔존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번역하였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인데, 제감은 이미 987년(성종 6) 村正으로 개편되어, 없어진 명칭이기 때문이

44)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5~46쪽.

45) 金龍善 編著, 2021, 『高麗墓誌銘集成(개정3판)』, 한림대학교 출판부.

46) 李基白, 1968, 위의 책, 218·219쪽.

다.<sup>47)</sup> 해당 설에서 이 묘지명은 제감직이 개편 이후에도 존속했다는 유일한 근거이다. 자료 해석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한다.

먼저, (가)에 따라 글자를 보입혔을 때 나타나는 ‘정용제감대정’은 매우 어색하다. 설령 제감이 있었다라도 직의 계통에 따라 ‘정용대정·제감’ 또는 ‘제감·정용대정’으로 기록되어야 했다. 또, 관직과 관련성을 보이는 ‘改差’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어 단순 ‘정용’과 改差가 호응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改差는 당대 宋에서 役과 관련하여 民戶를 대상으로도 사용되었다.<sup>48)</sup> 따라서 「송자청묘지명」의 ‘改差’도 향리역에서 군역으로의 전환을 나타낸 표현이라 본다면 크게 어색하지 않다.

결국 해당 묘지명의 내용 안에 제감직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보는 것이 여러 난점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① 부분은 ‘次弟監選’으로 표점을 두어 ‘차례대로 보고(감독하여) 뽑아’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sup>49)</sup> ② 부분도 대구를 고려하면 오히려 (나)와 같이 읽는 것이 부드럽다. 이렇게 (나)와 같이 해석한 「宋子清墓誌銘」은 군인으로 선발된 이가 그 장교직 체계 안에서 차례로 승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병마사가 선군하는 과정에서 송자청이 정용으로 뽑히고, 차례 따라 대정이 되었으며, 그 다음 낭장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에서의 선발을 통해 일품뿐 아니라 다른 병종의 장교층이 충원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지방군에서도 병종이 구분되고, 별도로 주현군 장교직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초이다.

47)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6년 9월 戊辰.

48) 『宋史』 권177, 志130 食貨上5 役法上. ‘開封府亟用舊額盡差, 如壇子之類, 近例率用剩員, 今悉改差民戶, 故爲煩擾以搖成法, 乞正其罪’.

49) (가)의 입장에서 ②의 ‘弟’를 ‘第’로 판독한 (나)가 비판되기도 했다(노명호, 2009, 위의 글, 29·30쪽). 하지만 사실 弟는 第와 통하는 글자이며(諸橋徹次, 1984, 「第」, 『大漢和辭典』 4, 大修館書店, 698쪽), 당대에 次弟가 ‘차례로’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이미 존재하여 참고된다(『高麗圖經』 권5, 宮殿1 王府. ‘聽受王旨, 次弟傳出’).

요컨대, 고려는 독립적인 호족들로부터 병권을 점차 회수하고, 특정 계층이 한 조직의 지휘권을 '전담'하지는 못하도록 주현군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복수의 계층에서 주현군의 장교가 충원되었고, 기존 직함이 영향을 미친다면 지휘체계 혼선의 가능성이 다분했다. 그 결과 주현군의 지휘권은 별장-(산원-)<sup>50)</sup>교위-대정 등 장교직에 한정해 전임되었다.

## 2. 주현군의 운영구조와 지휘관의 所要

지금까지 주현군은 장교직을 중심으로 지휘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품의 경우 사료 B, C, D군의 존재를 통해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정용·보승 또한 각기 장교직 중심 지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 존재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sup>51)</sup> 앞서 언급했듯이 경군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주현군도 보승·정용이 나뉘어 지휘 편제가 구성되어 있어야 연동이 수월하다. 그리고 이 역시 「宋子清墓誌銘」을 다루면서 확인하였다.

이제 지방에 동원되어 치안유지 등의 활동을 해야 할 주현군 장교직의 규모를 대략적이거나 가능해보고자 한다. 다음 <표 2>

50) 한편, 양계 편제에는 散員이 전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남아있는 북계 「式目形止案」(『文宗實錄』 권4, 文宗 卽位年 10월 庚辰)과 비교했을 때 누락이 아니라 실제 두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품 관련 D군에서도 산원은 확인할 수 없다. 당대의 자료인 B에서 일품 산원의 존재가 확인된 상황이기에, 현재로서는 ① 실제로는 주현군 내에 산원직이 있었을 가능성과 ② 어느 시점에 산원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②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술할 주현군 장교군의 규모를 고려하면, 같은 인원(200인)을 관장하는 별장·산원을 굳이 별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1) 앞서 족보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설사 후대에 筆削되었더라도 정용·보승의 장교직이 실제 운영되었던 직함이었기에 그 권위를 조상에게 부여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점도 주현군 병종별 장교직이 구성되었다는 한 방증이다.

는 『高麗史』州縣軍條를 정리한 것이다.<sup>52)</sup>

〈표 2〉 『高麗史』州縣軍條 기재 5도 군역 수

구분		보승	정용	일품	구분	보승	정용	일품	
交州道	春州道	144	776	572	慶尚道	蔚州道	134	145	181
	東州道	-	971	650		梁州道	57	147	173
	交州道	-	477	305		金州道	188	278	431
楊廣道	廣州道	258	546	536		密城道	245	427	532
	南京道	133	864	529		尚州牧道	655	1,307	532
	安南道	159	292	282		安東大都護道	591	953	1,018
	仁州道	194	187	227		京山府道	54	801	647
	水州道	175	291	372		晉州牧道	277	404	730
	忠州牧道	241	357	520		陝州道	373	229	448
	原州道	122	203	248		巨濟道	-	50	128
	淸州牧道	538	708	850		固城道	26	53	109
	公州道	326	533	527		南海道	17 (行首 포함)	17	64
	洪州道	338	497	713		西海道	黃州道	214	320
嘉林道	98	251	201	谷州道	295		293	291	
全羅道	全州牧道	150	1,214	867	安西大都護道		450	874	838
	南原道	205	800	636	豐州道		333	455	235
	古阜道	54	610	545	驪津道		210	107	612
	臨陂道	-	341	200	京畿	開城府道	52	240	190
	進禮道	-	211	152		承天府道	50	166	113
	羅州牧道	454	848	922		江華道	199	54	171
	靈光道	-	401	368		長湍道	134	343	303
	寶城道	322	412	513					
昇平道	240	184	415						

52) 『高麗史』州縣軍條 기록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① 1024년(신종 7)~1215년(고종 2) 사이라는 견해(千寬宇, 1958, 위의 글), ② 1136년(인종 14) 이후라는 견해(末松保和, 1962, 「高麗式目形止案について」, 『朝鮮學報』 25), ③ 1136년(인종 14)~1143년(인종 21) 사이라는 견해(江原正昭, 1963, 「高麗の州縣軍に関する一考察—女真人の高麗軍への編入を中心にして—」, 『朝鮮學報』 28)가 있다. 다만 『高麗史』에 나타난 군역이 특정 시기의 것일지라도, 주현군의 군적은 계속 수정·작성 되었을 것이다. 군현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었지만, 군의 배치나 수 등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李基白, 1968, 위의 책, 205·206쪽). 이후 내용은 이 점을 전제로 한다.

지휘관에게는 담당할 수 있는 군액 수가 정해져 있었다. 대정은 25인, 교위는 50인, 별장·산원은 200인이었다.<sup>53)</sup> 이는 경군을 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같은 명칭을 쓰는 주현군 장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고려의 주현군은 교대 번상하는 존재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F) 六軍의 三衛는 항상 도읍에 머물러 있고, 3년마다 군사를 뽑아 西北을 지키도록 하여 반년으로 교체한다. 변란이 있으면 무기를 잡고, 일이 생기면 服勞하는데, 일이 끝나면 복귀하여 농사를 지었다.<sup>54)</sup>

사료 F는 주현군의 번상과 관련한 『宋史』 高麗傳의 기록이다. 서북 변방을 지키는 일은 3년마다 선발하여 반년씩 교대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즉 6번의 군사가 반년을 주기로 번상하고 있는 셈이다.<sup>55)</sup> 그리고 전투병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용·보승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중국 측 자료인 만큼 이를 일반적인 운영상으로 간주하려면, 해당 사료가 그만큼 신뢰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F는 고려 군제의 근간을 상당 부분 그려내고 있다. 중앙의 6위 중 금오위·천우위·감문위는 항상 수도에 머무르는 전업 군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sup>56)</sup> 서북 지역을 지키는

53) 李基白, 1968, 위의 책, 74쪽.

54) 『宋史』 권417, 列傳246 外國3 高麗.

55) 鄭景鉉, 1992, 위의 논문, 175·176쪽. 한편, 공민왕대 기사(『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恭愍王 5년 11월 ; 권82, 志35 兵2 鎮守 恭愍王 6년 정월)를 바탕으로 1년의 번상주기가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李基白, 1968, 위의 책, 214·215쪽). 하지만 이는 당시 외침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된 상황에서의 특수한 것이라 파악해야 한다. 12개월간의 입역은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나치게 가혹한 형태이기 때문이다(鄭景鉉, 1992, 위의 논문, 176쪽).

방수역의 존재 역시 밝혀졌다.<sup>57)</sup> 한편, 고려의 입장에서 서북은 흔히 북계 지역을 말하지만, 하지만 F는 송에서 기록했기에 꼭 서북=북계라 볼 수 없다. 고려의 방수군은 북계·동계와 함께 서북 국경에서 개경으로 오는 축선에도 위치했음이 확인된다.<sup>58)</sup> 방수군 대다수는 동계보다는 북계 국경과 개경으로의 노선에 집중 배치되었다. 그렇다면 서북 지방을 지키도록 했다는 표현도 고려의 군제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인이기에 유사시 병기를 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노역하면서 군선을 건조하고,<sup>59)</sup> 또 성곽을 축성하며,<sup>60)</sup> 목재를 운반하기도 했다.<sup>61)</sup> 일이 끝나면 복귀하여 농토로 돌아갔다는 것도 非番인 경우 어떠한 役도 주어지지 않았음<sup>62)</sup>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F가 이렇듯 실상의 대략을 나타내고 있다면, 서북방 邊戍는 6번이었고 上京侍衛 역시 6번으로 교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만 병력이 서로 순환하면서 번이 엇갈리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현군의 6번 번차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주현군의 번상처는 개경과 북방의 변수처 등 두 곳이다. 다만, 경군도 북방으로의 방수역을 담당할 것이 확인된다.<sup>63)</sup> 中外軍士가 征役을 면하기 위해 청탁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가 있

56) 鄭景鉉, 1992, 위의 논문, 134·135쪽.

57) 李基白, 1968, 위의 책, 214·215쪽; 鄭景鉉, 1992, 위의 논문, 174~182쪽; 趙仁成, 1981, 위의 책, 121~123쪽.

58) 홍민호, 2021,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韓國史研究』 193, 138·139쪽.

59)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2년 3월 庚寅.

60)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附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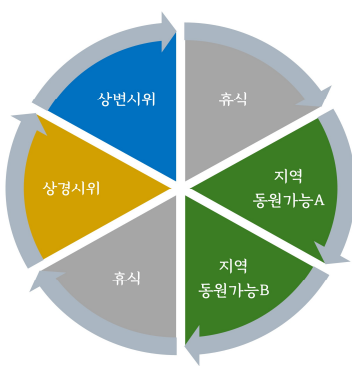
61) 『東國李相國全集』 권23, 記 「南行月日記」.

62) 이정희, 2000, 『고려시대 세계의 연구』, 國學資料院, 158~165쪽; 홍원기, 2001, 위의 책, 127·128쪽; 최종석, 2011, 위의 글, 37·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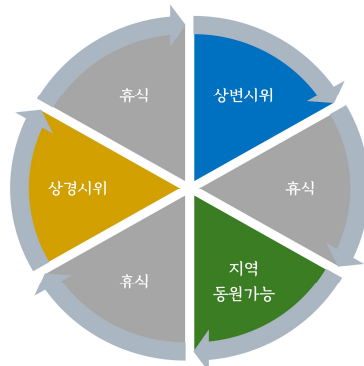
63) 李基白, 1968, 위의 책, 214쪽.

으므로<sup>64)</sup> 중·외의 군사들 모두 征戍의 役을 맡아야 했음은 확실하다. 다만 정말 경군과 주현군이 분담한 것인지, 주현군-경군 간 변상체계를 염두에 둔 포괄적인 인식으로서 나타난 표현인지는 불명하다. 또 변방에의 更戍가 경군의 일처럼 언급된 바 있으나,<sup>65)</sup> 이를 근거로 경군으로 편제된 이후에야 방수역을 수행하는 방식이 운영되었다고 직결하기는 힘들 것 같다. 주현군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모습일 수 있고, 주현군의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경군이 다수 방수할 때 우려되는 사안에 한정해 나타난 표현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변상제 운영 방식을 어떠한 방식이라고 정리하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주현군이 한번은 上京, 한번은 上邊하며 순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경하여 경군으로 편제된 뒤 상변하는 형태이다. 상정한 두 가지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1〉 상경 후 상변 변상



〈그림 2〉 상경/상변 구분 변상

64) 『高麗史』 권81, 兵1, 兵制 顯宗 20년 윤2월.

65)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각 군사도내 인원들은 6번으로 나뉘어 있었고, 여기에는 상경 번, 상변 번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차기 번상 대비 번, 변수 복귀 번, 비번 휴식 번도 각각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66)</sup>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번차들은 각 군사도 내에 상시 동원되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원되어있는 병력도 분명 필요했다. 지역 내 치안유지·경계 등을 맡을 군사들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의 경우, 지역 내 가용 번차는 1개뿐이다. 〈그림 2〉의 경우, 동원 가능 번차가 2개이다. 다만 후자는 입역 기간이 길어진 다소 가혹한 형태이므로, 농경의 유지 등을 위해 한 번만 동원되어있고, 나머지는 비번이었을 가능성도 무시하기는 힘들다.<sup>67)</sup> 다음은 6번 운영 시 정용·보승의 1개 번 균액으로, 이를 보며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66) 설사 준비·휴식이 온전히 6개월 보장되지 않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입역번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번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기 번상 번은 지역 내에 동원되었다가 곧바로 변수에 나서야 한다. 복귀 번 역시 곧장 지역 내에 동원되어야 한다. 본래의 번상 구조가 이처럼 가혹하게 구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67) 지역 내 1개 번차만 동원되어 있을 때 입변한 번차는 3/6으로, 후술할 일품군의 입변 번차 1/2과 전체 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다. 확언할 수 없지만, 이런 점에서도 1개 번차만 지역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표 3〉 주현군 정용·보승의 1개 번 군액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

구분		보승	정용	구분		보승	정용
交州道	春州道	24	129	慶尚道	蔚州道	22	24
	東州道	-	161		梁州道	9	24
	交州道	-	79		金州道	31	46
楊廣道	廣州道	43	91		密城道	40	71
	南京道	22	144		尚州牧道	109	217
	安南道	26	48		安東大都護道	98	158
	仁州道	32	31		京山府道	9	133
	水州道	29	48		晉州牧道	46	67
	忠州牧道	40	59		陝州道	62	38
	原州道	20	33		巨濟道	-	8
	淸州牧道	89	118		固城道	4	8
	公州道	54	88		南海道	2	2
	洪州道	56	82		西海道	黃州道	35
嘉林道	16	41	谷州道	49		48	
全羅道	全州牧道	25	202	安西大都護道		75	145
	南原道	34	133	豐州道		55	75
	古阜道	9	101	襄津道	35	17	
	臨陂道	-	56	京畿	開城府道	8	40
	進禮道	-	35		承天府道	8	27
	羅州牧道	75	141		江華道	33	9
	靈光道	-	66		長湍道	22	57
	寶城道	53	68				
	昇平道	40	30				

1개 번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상주목도로, 보승은 109인이다. 별장 1인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용은 217인으로, 별장 1~2인을 위시한 편제가 요구되는 수이다.<sup>68)</sup> 게다가 이 수도 군사도의 중점에 모두 집결했을 때의 수

68) 경군에도 방수군에도 별도의 직제가 있었으므로, 장교직군이 함께 입역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1회 번상할 번차의 인수를 같은 비율의 장교군, 즉 1/6 만큼의 장교들이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지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렇다면 결국 장교군의 수는 손실이 없으므로, 완편시의 군액을 고려해 지휘구조가 구성되었다

치이다. 주현군 배속은 군사도 내 속현까지도 배속되었다.<sup>69)</sup> 상주목의 경우, 『高麗史』地理志에 따르면 관할 속현이 24개이다. 물론 중심인 상주목에 보다 많은 수가 배치되었겠지만, 단순히 균분해보면 각 군현당 4~5명 남짓이 동원되어있는 셈이다. 여기서 <그림 2>에 따라 2개 번차가 동원되어 있었다고 해도, 각 군현별로 필요한 장교 수는 유의미하게 많지 않다. 즉 번상역의 총당 대상인 고려의 기본적인 주현군 운용구조 탓에, 각 지방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동원되어 치안·경비를 담당했고, 때문에 필요한 장교직의 수 폭도 크지 않았던 것이다.<sup>70)</sup>

노역부대인 1품군의 경우, 다행히 다음의 직접 사료가 남아있다.

G) 外方役軍을 나누어 3번으로 하였다. 옛 제도에 여러 州의 一品軍은 나누어 2번으로 삼고 가을에 이르러 교대하게 하여 이들을 순환하게 하였는데, 근래에 공사로 인하여 이를 합하여 부리다가 이 때 이르러 나눈 것이다.<sup>71)</sup>

G는 1191년(명종 21) 시점의 사료이다. 해당 시점에 이르러 일품을 3번으로 나누고 있다. 때문에 고려 전기 시점에는 지속

---

면 지역 내 군비 형태는 전체의 1/6만큼의 군액을 6/6만큼의 장교군이 통솔하고 있는 모양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5/6만큼의 장교군은 번에 따라 휴번해야 한다. 양자 모두 경제적·체제적으로 비효율적임은 물론, 지휘권 혼선의 소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총 군액 수에 맞추어 장교직이 설정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69) 李基白, 1968, 위의 책, 206·207쪽.

70) 한편,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는 않았지만, 지역 내 동원군·번상군이 제도적으로 구분되었다고 보기도 한다(洪元基, 2001, 위의 책, 128쪽). 참고로 조선의 진관은 番上正兵·留防正兵으로 구분되어 留防正兵이 지역의 방비를 책임졌다(車文燮, 1994, 「군사조직」,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43쪽). 즉 번상역자와 지역 동원역자가 구분되어 각기 번차에 따라 역을 수행했다. 고려의 주현군도 이러한 방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번상역자의 수의 비중이 훨씬 커야 하고, 지역 동원역자도 번이 운영되었을 것이다. 해당 지역 내 동원된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71) 『高麗史』 권83, 志37 兵3 工役軍.

적으로 2번 교대가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일품의 번차 계산은 더욱 간단하다. 동원되지 않으면 곧 비번이다. 2번 운영 시 1개 번 군액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주현군 일품의 1개 번 군액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

구분		일품	구분		일품
交州道	春州道	286	慶尚道	蔚州道	91
	東州道	325		梁州道	87
	交州道	153		金州道	216
楊廣道	廣州道	268		密城道	266
	南京道	265		尚州牧道	266
	安南道	141		安東	509
	仁州道	114		大都護道	
	水州道	186		京山府道	324
	忠州牧道	260		晉州牧道	365
	原州道	124		陝州道	224
	清州牧道	425	巨濟道	64	
	公州道	264	固城道	55	
	洪州道	357	南海道	32	
嘉林道	101	黃州道	139		
全羅道	全州牧道	434	西海道	谷州道	146
	南原道	318		安西大都護道	419
	古阜道	273		豐州道	
	臨陂道	100		甕津道	306
	進禮道	76	京畿	開城府道	95
	羅州牧道	461		承天府道	57
	靈光道	184		江華道	86
	竇城道	257		長湍道	152
	昇平道	208			

〈표 4〉에 나타난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안동대도호부도의 것으로, 509인이다. 『高麗史』地理志에 의거할 때 안동부의 속현은 14곳이므로,<sup>72)</sup> 균분했을 때 한 지역에 동원된 군액은 36명 남짓이다. 다만 일품의 경우 노역을 담당했기에 지역 치안 유지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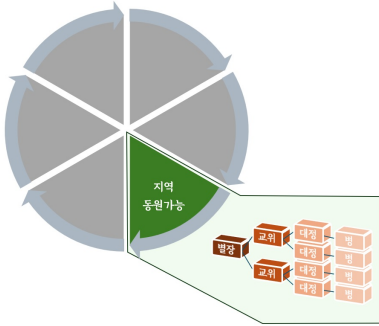
72)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安東府.

동 등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면, 모든 군현에 분속되기 보다 군사도 중심 군현에서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509인 전체도 별장 2~3인을 위시한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역시 많은 수의 장교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향리 외의 일품 장교의 존재도 확인했으므로, 이들이 차지할 비중을 소수라도 고려하면 호장 이하 향리들을 모두 일품군 장교로 동원할 필요가 없는 구조였다는 점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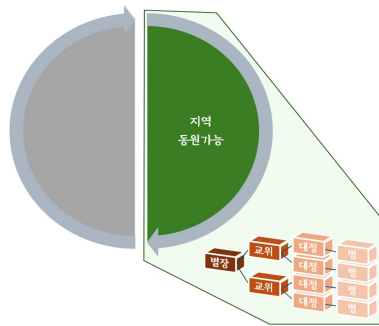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주현군의 정용·보승·일품 모두 많은 수의 장교직군이 요구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한정된 군사적 자원 하에 정용·보승 등 전투병은 수도 개경과 북방의 위협을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운영도 그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일품 역시 마찬가지였다. 휴식이 필요하였기에 번차를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한정된 수만이 동원되고 있었다. 지역 내 입번한 수가 작았던 만큼, 군이 과다한 지휘관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 3. 지휘체계 규모와 운영양태로 본 주현군의 성격

고려 전기 기준 정용·보승은 6개 번이 순환하였고, 일품은 2개 번이 순환하며 운영되었다. 군령 운용은 여타 관직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해당 군의 장교직에 전속되었다. 각 지역 내에 마련되었을 지휘관은 해당 영역의 병력을 직급에 따라 관리·운용하면서 치안유지·경계 등의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확인한 운영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 정용·보승의 지역 지휘체계 구성



〈그림 4〉 일품의 지역 지휘체계 구성

병종에 따라 〈그림 3〉과 〈그림 4〉로 나누어 도식하였지만, 의미하는 바는 같다. 번차 운영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 내 동원되어 있는 군의 수는 기재된 수보다 적었고, 지휘관의 소요는 그 규모에 해당하는 정도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지역 내 군역의 수가 천차만별이기에, 모든 층위의 장교 직위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sup>73)</sup> 그렇다면 장교군 규모는 보다 줄어드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략한 형태의 지휘체계는 주현군의 특징을 보여준다. 적어도 그 규모로 볼 때, 제도 운영의 원칙·의도 상으로는 체계 외의 다양한 직위들이 간여할 필요가 없었다.<sup>74)</sup>

이에 더하여, 운영상을 보다 구체화할 요소를 살피도록 한다. 각 병종은 지역 내에 동원되어있기도 하지만, 번상이나 공동의

73) 주진군이 참조된다. 『高麗史』州縣軍條를 보면 양계 각 군현의 최상부는 장교직의 출발점이 다양하다. 극단적으로는 衛山縣·翼谷縣·霜陰縣·雲林鎮·靜邊鎮 등 교위부터만 있거나, 아예 장교직이 나타나지 않는 汶山縣과 같은 경우도 있다. 陽岳鎮 같은 경우에는 중간부인 별장이 없는 형태로 편성되어있기도 하다.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구성 형태이다.

74) 머리말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군과 관련 없는 '사회적 위계' 등이 작용하여 군을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비원칙적으로, 군령계선 설정 시 의도된 바는 아닐 것이다.

役事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조칙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인솔자가 임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매번 추가 임명에 의해서만 군이 이동하지는 않으므로, 평시 임무지·귀환지로 향하는 군역을 인솔할 하부 관리자가 필요하다.

몇 가지 후보를 상정해볼 수 있다. 먼저, 앞서 확인해왔던 주현군 장교직군이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설정되어 있는 주현군 장교들이 병의 이동까지 주관하게 되면, 지휘관이 이탈해있는 동안 군령 운영 공백이 커진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 내 임무 수행을 위해 관할 지역에 긴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존재는 향리이다. 앞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役의 운영행정을 관리하기 때문이다.<sup>75)</sup> 시기가 이후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자료를 확인해본다.

H1) 全羅抄軍別監 洪溥이 말달려 보고하기를, “全州의 군마를 작년 12월 26일에 재촉하여 출발시켰는데, 5일간 행군하다가 전주로 되돌아와 난을 일으켰으니 長吏를 살해하고 축출했으며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羅州의 군사 역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sup>76)</sup>

H2) 全羅抄軍別監 洪溥이 보고하기를, “진주군이 이미 출발하였는데, 중간에 제멋대로 되돌아와 난을 일으켰으니 州의 長吏를 살해하고 축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羅州의 군사 역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sup>77)</sup>

75)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戶口 辛福 14년 8월·권81, 志35 兵1 兵制 恭愍王 12년 5월. 향리는 방수의 번차에 맞는 군인의 동원을 행정적으로 관리했다. 향리 조직 내에 ‘兵’이 들어가는 기관·직함의 존재는 그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상급 향리의 경우 번상의 행정적 ‘절차’를 총괄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병을 이끌고 나섰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76) 『高麗史』 권22, 世家22 高宗 4년 1월 庚寅.

77) 『高麗史節要』 권15, 高宗 4년 1월.

H군은 같은 사건이다. H1에 의하면 전주의 군마는 전주를 출발해 5일간 행군하였다. H2에서 이들이 제멋대로 돌아왔다고 표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시 군 제대 내에 실제 지휘권자의 어떠한 통솔을 받고 있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난을 일으킨 군마는 전주로 귀환해서야 다시 長吏를 마주했고, 죽이고 내쫓을 수 있었다. 行馬의 단계는 향리와 관련이 없었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향리직에는 군령권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확인된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주현군 조직 내에서 관련자들을 다시 찾아보도록 한다.

I) 나라에서 精勇·保勝軍을 보내 官船을 건조하게 하자 陳大有는 上戶長 李澤民 등과 함께 역을 감독하기를 심히 가혹하게 했다. 旗頭인 竹同 등 여섯 명이 반란을 일으켰고 官奴와 불평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진대유를 산사로 내쫓고 이택민 등 10여 명의 집을 불태워 버렸다. 州吏들이 모두 도망쳐 버리자 반도들은 判官 高孝升을 겁박해 주리를 모조리 바꾸게 했으며, 고효승은 다만 임명해 줄 따름이었다. 按察使 朴惟甫가 전주에 들어서자 반적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추고[盛陳兵伍], 진대유의 위법사실을 고발하였다.<sup>78)</sup>

I는 C의 앞부분이다. 비록 명종 연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개편 조치가 확인되지 않기에 고려 전기와 판이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적으로 관선을 건조하는 역사가 있었고, 정용과 보승은 다른 지역에서 전주로 이동해왔다. 이 때 이러한 이동을 주관한 이들이 당시 전주사육이었던 진대유나 상

78) 『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 12년 3월 庚寅.

호장 이택민일 수는 없다. 모든 외관·향리가, 더욱이 국가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지역 범주까지 넘나들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up>79)</sup> 다만 이들은 役事의 관리 차원에서 해당 지역 내에 도착한 정용·보승을 감독했을 뿐이다.<sup>80)</sup>

그렇다면 주목되는 존재는 竹同이다. 죽동은 기두의 직위를 가졌는데, 반란을 주동하고 대오를 통제할 정도의 위치였다. 기두는 주현군 뿐 아니라 京軍·禁軍 등 타군에도 폭넓게 설정되어 있었다. ‘內直旗頭’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고<sup>81)</sup> 개경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행적 안에서 기두가 확인되기 때문이다.<sup>82)</sup> 그리고 ‘旗頭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두가 일정의 무리를 이루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다.<sup>83)</sup> 물론 기두의 자의 자체로도 그 역할을 짐작할 수 있지만, 사료상에 추가적 정보가 나타난다.

J1) 西班은 攝郎將 이상은 참상관에 준하고, 散員 이상은 참외관에 준하며, 校尉·隊正은 人吏에 준하고, 旗頭·都典은 掌固에 준

79) 양계의 군사도를 책임지고 있는 분도장군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마사의 지휘 하에 서야 도내를 순행할 수 있었다(『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2 李義文). 그만큼 고려시대에도 군 지휘 계통과 관할 지역 범주는 경직된 것이었다. 분도장군과 지휘 차이가 상당한 사록참군사나 향리가 이를 자유로이 넘나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80) 선행연구는 해당 사료를 사록참군사 등 지역 내 ‘屬官’과 상호장 등 향리가 지휘권을 보유한 근거로 삼았다(권영국, 2019, 위의 책, 152~155쪽; 구산우, 2020, 위의 글, 184·185쪽). 하지만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役事의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지휘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박종진 역시 이 사례를 역사의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하였다(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53쪽). 한편, 요역의 경우 수령의 하부에서 향리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박종진, 2000, 위의 책, 145~158쪽; 이정희, 2000, 위의 책, 92~112쪽). 하지만 별도의 체계가 노정되어 있는 군인과 요역의 수취대상이었던 일반 민들은 엄연히 다르다. 때문에 군의 지휘권과 役夫에 대한 권한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할 수는 없다.

81) 『高麗史』 권127, 列傳40 叛逆1 李資謙.

82) 『高麗史』 권19, 明宗 6년 8월 丁丑·권128, 列傳41 叛逆2 鄭仲夫.

83) 『高麗史』 권17, 世家17 仁宗 22년 9월 甲戌.

하여 예를 행한다.<sup>84)</sup>

J2) 각 관청의 掌固와 諸衛의 旗頭에게는 初職을 하사하였다.<sup>85)</sup>

J3) 용호좌우친위의 기두는 등근 무늬 비단 포, 도금한 속대, 전각 복두를 착용하니 대략 중국[中朝]의 복식 제도와 유사하다. 작은 기패를 가지고서 6군에 명령하니 대개 군위의 대장(隊長)이다.<sup>86)</sup>

J4) 육군산원기두는 자연도에서 바야흐로 보았는데, 역시 군대 안에서 총령하는 자이다.<sup>87)</sup>

J5) 神旗 다음에는 비단옷을 입은 용호친위군이 있다. 기두는 한 명으로 말을 타고 앞에서 이끌며, 작고 붉은 깃발을 잡는다.<sup>88)</sup>

J군은 기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J1은 叅上·叅外·人吏·掌固가 재신과 추밀을, 혹은 人吏·掌固가 참상·참외를 알현할 때의 의례에 나타난 일종의 부직이다. 대강의 서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교군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교위·대정보다 하위에서 기두의 의례가 규정되고 있다.<sup>89)</sup> J2는 1102년(숙종 7) 숙종이 서경으로 행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인데, 기두에게 初職이 하사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기두라는 직분은 이전에는 어떠한 관직이 부여되지 않은 채 수행하는 직임임을 확인할 수 있다. J1·J2를 종합할 때, 기두는 장교군의 계선을 넘어서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일정의 의례를 두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軍人보다는 상위에 있었다.

그럼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J3·J4·J5는 『高麗圖經』에 실린 기록이다. 주지하듯 『高麗圖經』은 1123년에 고려에 왔던 송

84) 『高麗史』 권68, 志22 禮10 嘉禮 叅上叅外人吏掌固謁宰樞及人吏掌固謁叅上叅外儀.

85) 『高麗史』 권11, 世家11 肅宗 7년 11월 丁丑.

86) 『高麗圖經』 권11, 仗衛 龍虎左右親衛旗頭.

87) 『高麗圖經』 권12, 仗衛 六軍散員旗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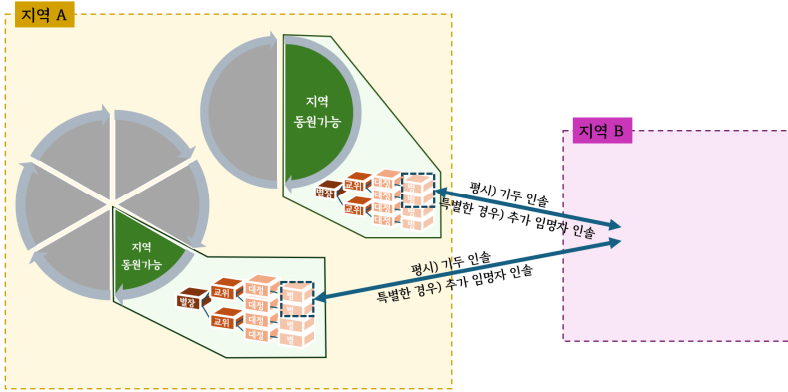
88) 『高麗圖經』 권24, 節仗 次騎兵.

89) 한편, 해당 사료에 나타나는 都典은 街衢監行시 인원이 규정되어 있는 단편적인 기록(『高麗史』 권83, 志37 兵3 檢點軍) 외에는 확인되지 않아 더 이상의 설명이 어렵다.

사신단의 일원이었던 서공이 고려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그림과 함께 적은 책이다. 그런데 서공은 기두에 대해 隊長 혹은 總領者로 묘사하고 있다. J5에서는 사신단의 행렬 앞쪽에서 이끄는 기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外人의 눈에 보인 기두는 적어도 군인들에 앞서서 이끌고 인도하는 직무를 했다. 같은 명칭이 주현군에도 활용되었으므로, 주현군의 그것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 보인다.<sup>90)</sup> I가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I를 재구성해보도록 한다. 조정에서는 관선의 역사를 전주에 부담시키고자 했고, 타 지역의 정용·보승을 전주로 파견하여 인력을 보충했다. 이 때 타 지역의 정용·보승을 전주로 인솔해왔던 인물이 기두 죽동 등 6인이었다. 그리고 사록참군사 진대유·상호장 이택민이 감독하는 役事에 투입된 것이다. 즉, 기두는 병력의 인솔을 담당했던 (상층의) 군인으로, 주현군 장교군의 하부구조를 이루었다. 이상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90) 한편, 송에서도 기두는 ‘置引戰’ 시에 일정 역할을 한다거나『宋史』 권190, 志143 兵4 鄉兵1 河東陝西弓箭手 元豐 3년), 훈련 시 병사 중 ‘壯勇善槍者’를 기두로 선발하고 있다(『宋史』 권195, 志148 兵9 訓練之制 熙寧 7년). 고려의 기두 운영과 닮은 요소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宋人 서공도 고려의 기두를 잘못 파악해 묘사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림 5〉 주현군의 타지역 이동 도식

〈그림 5〉는 출발지를 지역 A로, 임무 수행지를 지역 B로 가정한 도식이다. 이 때 지역 B는 변상지가 될 수도, 혹은 I의 상황처럼 공동의 역사가 벌어지는 곳일 수도 있다. 이 때, 특별한 경우에는 인솔자가 임명될 수도 있다. H군에 보이는 초군별감이나, 사록으로서 병을 이끌었던 이규보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sup>91)</sup>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였고, 평시에는 기두가 해당 임지 혹은 귀환지로 병력을 인솔하였다. 물론 기두가 주현군에만 활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 의한 병력 이동이 보이는 점은 지역 내 소략한 지휘관 편제와 변상입역 등을 기본 구조로 하는 주현군 운영상의 한 단면이다.

정리하자면, 주현군은 그 특성상 소수의 장교군만 두었고, 이들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 지역에 긴박되어야 했다. 해당 지

91) 『東國李相國全集』 권9, 古律詩 「正月十九日復到富寧郡作」·권23, 記 「南行月日記」. 이 중 후자에 의하면 이규보는 ‘奉詔勅’ 하여 별목의 역사를 담당하게 되었음이 직접 드러나 있다. 조칙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나타난 모습이자, 役事 관리의 차원이다. 사록참군사가 평시 주현군 지휘권 보유했기에 나온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역의 치안도 유지해야 했고, 경계 업무도 관리해야 했다. 때문에 임무에 따라 병력이 이동할 때는 장교군 하부구조에 있는 기두들에 의해 병력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운영상으로 인해 고려 군적의 흔적에 해당하는 『高麗史』州縣軍條에도 양계와 5도의 기재 방식을 달리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고려는 양계지역의 획정을 통해 外敵의 침입을 막기 위한 ‘戰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번상제의 운영을 통해 5도 지역은 전구를 뒷받침할 일종의 ‘보충대’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한정된 군사 자원을 일정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때, 집중점에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반면 그 외 지역은 ‘가용할 수 있는 수가 각기 어느 정도인가’가 보다 주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상시 동원되어있는 주현군은 그 지휘체계·병력의 지역별 ‘배치’를 상세히 기록하였고, 주현군은 번상에 중점을 두었기에 세세한 군현별 배속보다는 ‘가용 가능 수’를 일정 단위로 묶어 기록한 형태를 취한 것이다. 결국 기록의 형태 역시 실제 고려 주현군의 운영 양태를 반영한 것이었던 셈이다.

## 맺음말

신라 말 지방에는 시대적인 혼란을 틈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반독립적인 호족이 나타났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지방사회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를 가하고, 국가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조처들을 해나갔다. 그 결과 주현군도 精勇·保勝·一品의 병종이 구분되었고 別將-(散員)-校尉-隊正의 장교직제를 중심

으로 지휘권이 한정·전속되었다. 정비 기조는 특정 계층에게 병권을 담보해주거나 전유하게 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직함이 주현군 지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주현군은 『高麗史』 州縣軍條를 통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재된 군액 수 모두가 지역 내에 동원되어 있을 수는 없었다. 주현군은 번차를 나누어 운영되었고, 번상시위제와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던 군 규모는 州縣軍條에 적힌 그대로가 아니었다. 번상한 번차와 휴번인 번차들을 고려하면, 지역 내에서 입번한 이들의 규모는 줄어든다.

때문에 이를 담당할 지휘관의 所要도 크지 않았다. 그래서 주현군의 지휘체계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한편, 주현군의 여러 역할들을 고려하면 평시에도 군액의 이동을 인도할 이들이 필요했다. 소략한 주현군의 장교군은 지휘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 지역에 긴박되어야 했으므로, 평시에는 장교군 하부의 기두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현군 운영상의 한 단면이다.

『高麗史』 州縣軍條의 기재방식은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상시 동원되어있는 양계 주진군은 그 지휘체계·군액의 지역별 배치를 상세히 기록하였고, 5도 주현군은 번상에 중점을 두었기에 세세한 군현별 배속보다는 가용 가능 수를 일정 단위로 묶어 기록한 형태를 취했다. 주현군은 이른바 보충대 역할에 특화되도록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 『文宗實錄』, 『宋史』,  
『高麗圖經』, 『東國李相國全集』,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金龍善 編著, 2021, 『高麗墓誌銘集成(개정3판)』, 한림대학교 출판부.

### 2. 논문 및 저서

- 강은경, 2002, 『高麗時代 戶長層 研究』, 혜안.  
구산우, 2020,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권영국, 2019,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박경자, 2001, 『고려시대 향리 연구』, 국학자료원.  
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李基白, 1968,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이정희, 2000,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國學資料院.  
鄭景鉉, 1992,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研究』,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千寬宇, 1958, 「閑人考」, 『社會科學』 2.  
홍민호, 2021,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韓國史研究』 193  
洪元基, 2001, 『高麗前期軍制研究』, 혜안.  
江原正昭, 1963,  
「高麗の州縣軍に関する一考察—女真人の高麗軍への編入を中心にして—」,  
『朝鮮學報』 28  
末松

〈Abstract〉

## Command Structure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Juhyeongun in the Early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Hong, Min-Ho(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After unifying the Later Three Kingdoms, Goryeo began to assert direct control over local societies and implemented measures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centralized national order. As part of this process, the Juhyeongun(州縣軍) was restructured, with command authority becoming exclusive to designated officer positions. The guiding principle behind this reorganization was to prevent any particular social class from monopolizing military authority. Accordingly, restrictions were introduced to ensure that individuals holding other titles could not interfere with the command of the Juhyeongun.

The Juhyeongun could not maintain its full listed troop quota mobilized within the region at all times. Troops were organized into rotating shifts and periodically dispatched to perform guard duties in the capital or other designated areas. As a result, the number of active soldiers in a given locality did not correspond to the figures recorded in the Juhyeongun section. Considering those on duty and those resting between rotations, the actual number of troops present in the reg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This limited deployment reduced the need for a large number of commanders, resulting in a relatively simplified command structure for the Juhyeongun. Nevertheless, given its multiple

functions, including those in peacetime, personnel were still required to direct and oversee troop movements. Since the officer corps remained stationed in their respective regions, subordinate leaders known as Gidu(旗頭) assumed these operational responsibilities. This illustrates one aspect of the Juhyeongun's operational structure.

Keywords: Juhyeongun(州縣軍), Command Structure, rotating shifts, military order, Commander

논문투고일 : 2025.04.05. 심사완료일 : 2025.05.26. 게재확정일 : 2025.06.04.